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원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59 발의연월일: 2024. 9. 12.

발 의 자: 박지원·김용민·강유정

이건태 · 장종태 · 전용기

이성윤 • 서영교 • 문진석

이개호 · 김준혁 · 임미애

박균택 • 이재정 • 장철민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외환의 죄(外患의罪)는 전시상황에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인 바, 평시상황에서의 동맹국·우방국·非우방국 등에 의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.

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적국뿐만 아니라 동맹·우방·非우방국 등 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,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중형에 처하 고 있음.

그러나, 우리의 형법상 "외환의 죄"는 적용의 대상을 적국(북한)으로 만 한정하고 있기에 적국 외 동맹·우방·非우방국 등의 외국정부에 소속된 자 또는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자가 국가기밀을 탈취 등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하여도 동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.

이에 형법상 "외환의 죄"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, 평시상황을 고려한 외국 등을 위한 간첩행위 및 외국 등으로부터의 영향력 공작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규제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, 제102조, 제104조).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問 諜"을 "국가기밀을 탐지·수집·누설·전달·중개(이하 "간첩"이라 한 다)"로 한다.

제98조(간첩)

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8조의2(외국 등을 위한 안보위협) ① 외국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정부 산하 단체(이하 "외국등"이라 한다)에 소속된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 - 1. 가첩 행위
 - 2. 사실을 왜곡 또는 조작하거나 허위의 사실 공연히 우편 또는 전 자매체로 유포·전달하는 행위
 - 3. 국내외 정부정책과 관련된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는 행위
 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하여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
 - ② 외국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자가

- 외국등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- ③ 외국 정보기관 소속인 자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제1항에서 정한 형의 1/2을 가중한다.
- ④ 제98조의2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제2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.
-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행 혅 개 정 아 第98條(間諜) ① 敵國을 爲하여 제98조(간첩) ① ----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| 국가기밀을 수집・탐지・보관 助한 者는 死刑, 無期 또는 7年 ·누설·전달·중개(이하 "간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. 첩"이라 한다)-----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98조의2(외국 등을 위한 안보 <u><신</u> 설> 위협) ① 외국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정부 산하 단체(이하 "외국등"이라 한다) 에 소속된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. 1. 간첩 행위 2. 사실을 왜곡 또는 조작하거 나 허위의 사실 공연히 우편 또는 전자매체로 유포·전달 행위 3. 국내외 정부정책과 관련된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부 당한 영향력 행사하는 행위

第102條(準敵國)(생략)

<u><신 설></u>

第104條(同盟國) (생략)

<신 설>
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하여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을 권유하는행위
- ② 외국등으로부터 금품을 받 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 은 자가 외국등을 위하여 제1 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로 약 속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- ③ 외국 정보기관 소속인 자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에 제1항에서 정한 형의 1/2을 가중한다.
- ④ 제98조의2의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 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제2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.
- 第102條(準敵國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 -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第104條(同盟國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 -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